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권명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025

발의연월일: 2021. 6. 23.

발 의 자:권명호·유상범·엄태영

김도읍 · 송언석 · 이만희

최춘식 · 최형두 · 강기윤

구자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가맹본부,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·연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, 해당 업무는 시설·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다만,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육기관 등이 교육·연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.

그러나,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,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(안 제31조의2제5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1조제3항 중 "청문을"을 "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 청문을"로 한다. 제31조의2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(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와	제31조(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와
자격정지) ①·② (생 략)	자격정지) ①・② (현행과 같
	음)
③ 제1항에 따라 가맹거래사의	3
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	
<u>청문을</u> 실시하여야 한다.	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
	<u>청문을</u>
제31조의2(가맹사업거래에 대한	제31조의2(가맹사업거래에 대한
교육 등) ① ~ ④ (생 략)	교육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
	승)
<u> <신 설></u>	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
	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
	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 청
	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⑤ (생 략)	<u>⑥</u> (현행 제5항과 같음)